

# 法定 「특별연장근로」 인가제도 활용방법·절차 공지

## □ 배 경

- 태풍 '솔릭'에 따른 통신망 장애와 긴급복구로 법정근로한도 초과 예상
- 국민기업으로서의 의무 이행과 현장의 통신장애 복구의 원활한 지원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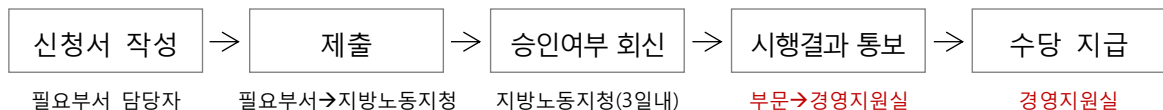
## □ 제도 개요

- 근거 : 근로기준법 제53조 제④항<sup>1</sup>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 ①~③항
  - ✓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의 인가, 근로자 동의로 법정근로한도 초과 가능
- 해당요건(동법 시행규칙 제9조)

① 자연재해	태풍, 홍수 지진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피해	-
② 재난	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	감염병 확산 예방, 화재, 폭발사고 등
③ 이에 준하는 사고	재난과 유사한 수준의 긴급성과 연장근로 불가피성이 요구되는 경우	방송·통신 마비

- 적용요건 : ①고용노동부<sup>지방노동청</sup>의 인가 + ②근로자의 동의
  - 사태가 급박하여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는 사후 승인 가능

### <운영절차>



## □ 향후계획(공지방안)

- C/N 부문의 복무담당부서에 e-Mail 공지(금일)
- ✓ 통신망 피해 확대(산) 시, 노동조합 협조요청 및 C/N부문 현장에 전파

<sup>1</sup> "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."